

7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주의사항

- 정해진 학위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함.
(※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8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자로서, 최소학점 이상을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함.
※ 최소 인정 학점 :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 이상
- 학위취득을 위해 부족한 학점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만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과정이수 확인서, 성적증명서」
(※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
 - 자격: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자격시험접수증 불가)
 - 시간제: 시간제「성적증명서」

9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전공 이용

-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간호·보건계열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함.
-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과목[간호학-7과목, 보건학사-4과목]은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신규 이수해야 함.

10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재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42학점)/1학기(24학점 이내)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됨.
- 대학 재적(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일반선택'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학위요건 중 일반선택 학점에 대한 의무이수학점은 없습니다. 간혹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일반선택 학점이 부족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요건과 교양 요건을 제외한 학점(전문학사 20학점, 학사 50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도 되지만, 꼭 일반선택으로만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이수하면, 그만큼 일반선택 학점은 적게 수강해도 됩니다.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학위 신청'이 필수!

-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2월 학위 :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 학위 : 6월 15일 ~ 7월 15일
- 학위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학위가 저절로 수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위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 취득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학위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에 학위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학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취득된 학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2월에만 시행되며, 8월 학위취득자는 2월에 학위수여식 참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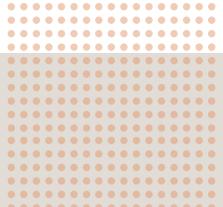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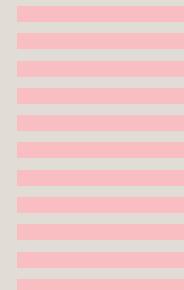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번지)
Tel. (국번없이) 1600-0400 Fax. 02-3780-9850 www.cb.or.kr



PL3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렛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나,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